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이유

-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 대상 범위를 센서 등의 인지성능이 저하된 경우로 축소하여 규제를 완화하고,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도로 유형이 변경된 경우를 보고 대상으로 명문화하여 피규제인의 혼란 방지

2. 주요내용

-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축소(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)
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을 센서의 인지범위 감소 등의 성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로 축소
 - ※ 예1) 감지각도 90°센서 4개를 감지각도 360°센서 1개로 변경
- (현행) 보고대상 → (개선) 보고대상 제외
 - ※ 예2) 감지범위 100m, A社 라이다를 감지범위 100m, B社 라이다로 변경
- (현행) 보고대상 → (개선) 보고대상 제외
- 자율주행자동차 변경사항 보고대상 명문화(안 제26조의3제1항제1호나목)
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·연구 계획서에서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한 항목과 보고대상 항목이 동일하도록 명문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특기할 사항 없음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카메라, 레이더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
인지 범위, 측정 주기 등의 성능 저하

제26조의3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·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
추가,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의3(임시운행 자율주행차 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) ① 법 제27조제5항에서 “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,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	제26조의3(임시운행 자율주행차 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. 카메라, 레이더 및 통신장치 등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<u>수량 감소</u> 또는 성능 저하	1.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가. ----- ----- ----- <u>인지 범위,</u> <u>측정 주기 등의</u> --
나.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·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	나. ----- ----- -----, <u>운행도로</u> <u>유형의 변경 또는</u> 자율주행 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
2. 3. (생략)	2. 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